

(별지 제1호 서식)

국민감사청구서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4. 1.

1. 청구인	대표자성명	전국시도교육청노조 오재형 외 (인)	청구인 수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02)736-7570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9(3층)				
2. 감사대상기관	교육부					
3. 감사청구 제목 :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소급 지급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						

4. 감사청구사항

헌법재판소 2010-헌바-220(2012.8.2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제2항 제2호등 위헌 소원에 대한 판결로 인한 교육부의 중학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계획 안내(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057, 2013.6.5)호 및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2013.12.4)의 내용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34조 2항 및 제35조 3호, 공무원보수 규정 제31조 2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위배 여부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함.

5. 감사청구이유

- 별첨

6. 기타(소송 등 불복구제절차 제기 유무)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또는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및 기타 감사청구 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

청구인 연명부 : 별첨

※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및 연락처(전화 등) 명시

관련증빙자료

- 1) 중학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계획 안내(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057, 2013.6.5)
- 2)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교육부 2013.12.4)
- 3) 2013년 제9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자료(2013.12.13)
- 4) 관련 법령 발췌

감사 청구 사유

I. 개요

1. 헌법재판소 2010-헌바-220(2012.8.23) 초 · 중등교육법 제30조의 제2항 제2호등 위헌 소원에 대한 판결로 인해 중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었던 교원연구비 및 관리수당의 지급이 2013.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됨.
2. 중학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계획 안내(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057, 2013.6.5)호의 시행으로 교원에 대해서만 각 시 · 도 교육규칙 개정을 통한 교원연구비 소급 지급 결정(2013년 3월분부터) 통보
3.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2013.12.4)를 통해 2014년 3월부터 교원연구비의 지급 방안 마련

II. 위법 사항

1. 개요 2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 2호에 의거 연구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거 규정하여야 하나 각 시 · 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통한 연구수당의 지급은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소급 지급이 불가하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육규칙의 개정을 통해 기 소급 지급한 교원연구비 역시 환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2. 개요 3과 관련하여 이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제35조 3호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 제2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의거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 법령의 개정을 통한 교원연구비의 지급이 타당함.
3. ‘공무원의 금전적 보수는 법령에 의거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교육규칙에 근거 해서 보수 성격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 (별첨 교육부 부교육감 회의자료 중)을 교육부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
4. 별첨 교육부의 부교육감 회의 자료(2013.12.13)에 의하면, - 변호사의 자문 내용 중 ‘지방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있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함’ (변호사 김○○)

-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11에 의거 규정하여야 함.

‘지급 시기가 일률적이고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정액이 지급되고 동일한 호봉과 근무 연한자들 사이에서 그 지급 금액이 같은 경우라면, 이는 보수나 수당, 상여의 일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변호사 남○○)

- 교원연구비 역시 지급시기가 보수 지급일에 모든 교원에게 정액이 지급되고 동일한 호봉과 근무 연한자들 사이에서 그 지급금액이 같은 경우임.

‘학교회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세입 및 세출의 항목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지방공무원의 수당을 신설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변호사 전○○)

-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의 수당을 신설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 아니함.

‘학교회계는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령 근거 없이 교육규칙으로 교육행정관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법’ (변호사 최○○)

- 법령 근거 없이 교육규칙으로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또한 위법임.

‘교육행정관리비는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봉급) 또는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수당)에 해당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지급할 수 없는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 (변호사 황○○)

- 교원연구비 또한 부가급여(수당)에 해당하므로 법률(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근거하지 않고 서는 지급할 수 없는 공무원의 보수 임.

III. 감사 요청 사항

- 위와 같이 2010-헌바-220(2012.8.23) - 초 · 중등교육법 제30조의 제2항 제2호등 위헌 소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교직원의 교원연구비 및 관리수당의 지급 중단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교원에 대한 교원연구비 지급 방안은 감사청구 사유에 명시한 바,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 사항으로 교원연구비 지급의 즉각적 중단 및 기 소급 지급한 교원연구비를 즉시 환수하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역시 즉시 철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하오니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시정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두 손 모아 스승 감사! 두 팔 벌려 제자 사랑!

교육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중학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계획 안내

1. 관련 :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517('13.5.15) 및 우리부 교원복지연수과-1919('13.5.31)호

2. 그동안 「시·도 교육감협의회(3.21)」 등에서 요청한 중학교 교원연구비의 보전을 위한 우리부의 수당규정 개정 요청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는 우리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전의 근거를 반영할 대상규정(법령포함), 보전방법 등의 대안 마련과 시행을 약속하면서, 우선 우리부에서 교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학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계획(중학교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방안 마련 예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수당규정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 전까지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도 교육규칙(학교회계)」 개정을 통해 지급중지 전까지 지급하던 수준으로 소급하여 중학교 교원연구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임시보전 계획 1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강원도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관

교원복지연수과장

학교정책관

교육정책실장

협조자 학생복지안전
관

지방교육지원국장

시행 교원복지연수과-2057 (2013.06.05.) 접수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 www.moe.go.kr
전화 02-2100-6464 / 전송 02-2100-6970 / hwa9158@mest.go.kr / 공개

꿈을 주시는 선생님, 끼를 키우는 우리들

중학교 교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조치 계획

□ 추진 배경

- 헌법재판소, 공립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위헌 결정('12.8.23)
- 시·도교육청,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 중단('13.3월~)
 - 교육감협의회 등,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13.3월~)

□ 관계부처 협의 경과

- ('12.12~'13.2) 우리부, 「교원수당체계 개편안」을 통한 보전 추진
 - 유초보전수당 및 중등교원연구비 폐지 후 보직교사수당 및 담임교사 수당 인상에 반영
 - 예산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해 관계부처 간 합의('13.2.21)
 - 다만, 수당규정 개정안 부칙조항 이견 등으로 국무회의 상정 무산('13.2.22)
- ('12.4.22) 우리부, 안행부에 수당규정 개정 재차 요청
 -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이 최선이라고 판단(월 6~9만원, 총 740억원)
- ('12.5.14) 양 부처 장관 간담회 개최
 - 수당규정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 전까지 임시보전에 합의
- ('13.5.15) 안행부, 법적근거 마련 전까지 우리부에서 임시보전 이행 요청
 - 중학교 교원의 사기를 고려해 우리부에 자체보전을 요청하고 수당규정 개정 등을 포함한 법적근거 마련 이행 약속

□ 조치 계획

○ 기본 방향

- 안행부 의견 존중 및 중학교 교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법적근거 마련 전까지 중학교 교원연구비의 조속한 임시보전
 - * 중학교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방안 마련

○ 지급 금액 수준

- 지급중지 전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하던 수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 보전 방법 : 「시·도 교육규칙(학교회계)」 개정을 통한 보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시·도 교육규칙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예시)
<신설>	제○조(기준경비) ①교육감은 학교회계의 건전한 운용과 학교 간 재정 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11월 30일 까지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등으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중학교 교원 연구활동비 3. ○○○수당 ③제2항에 따른 기준경비는 학교회계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등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부칙(경과조치)제○조제2항제2호의 기준경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 시·도교육청 협조

○ 예시안을 참고하여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교육규칙 개정 후 가능한 조속히 지급 협조

○ 예산 미편성 시·도교육청의 경우 예산 추경 노력 협조

별첨2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안

교육부 공고 제2013 - 280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교육부장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12.8.23) 후 지급 중단된 중학교 교원연구비를 교원들의 사기진작 및 교육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법적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연구비의 지급 근거 신설(안 제8조 제1항)

- (1)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한 지원비용에 연구비를 추가
- (2) 국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립학교와 그 외의 학교로 구분하여 시행(안 제8조 제2항)

(1) 국립학교(국립유치원 포함)는 교육부장관, 그 외에는 시·도 교육감이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 02-2100-6464, FAX : 02-2100-6390)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 FAX(모사전송)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18호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우 : 110-760)

붙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교육감은”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으로, “문화시설이용비용을” “문화시설이용비용, 매월 정액의 연구를 위한 비용을”으로, 동조 제2항 중 “교육감이 정한다.”를 “국립학교(국립유치원 포함)는 교육부 장관, 그 외에는 교육감이 정하되 교육활동비용 중 연구비는 국립학교(국립유치원 포함)에 준하여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교육활동관련비용의 지원)</p> <p>① <u>교육감은</u>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교육활동관련비용의 지원)</p> <p>① <u>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u> ----- ----- 문 <u>문화시설이용비용, 매월 정액의 연</u> <u>구를 위한 비용을</u> ----- -----</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활동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u>교육감이 정한다.</u></p>	<p>② ----- ----- ----- <u>국립학교(국립유치원 포함)는 교육부 장관, 그 외에는 교육감이 정하되 교육활동비용 중 연구비는 국립학교(국립유치원 포함)에 준하여 정한다.</u></p>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연 락 처	(02) 2100 - 6464

별첨 3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장소 : 교육부 대회의실 1617호

일시 : 2013. 12. 13(금) 11:00~13:00

2013년

제9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자료

2013. 12. 13.(금)

교 육 부

14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불가 관련

□ 배경 및 경과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12. 8. 23)에 따라, 중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원연구비 및 관리수당 등 지급 중단(13. 3월)
-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계획을 시도교육청에 통보 ('13.10.23)하였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철회('13.10.28)
-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불가 방침 공문 시행 ('13.12. 3)

□ 수당 보전의 경우 문제점

- (법적 근거) 지방공무원법 상 보수는 법령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방공무원에게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 성격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비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기보다는 보수 성격을 갖추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금전적 보수는 법령에 근거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규칙에 근거해서 보수 성격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

* 제44조(보수 결정의 원칙)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당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보수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비변상 경비라 하더라도 교육규칙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

- * 제46조(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 (형평성 문제) 과거 수당을 보전하지 않은 초등학교 직원 등과 형평에 맞지 않음
 -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한 육성회비 폐지('97)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전하지 않은 선례가 있음
 - 유·초등학교 근무 지방공무원(각급 학교간) 및 교육청과 직속기관 근무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 상호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시·도 교육청 협조사항

- (수당 보전 불가) 지방공무원의 학교운영지원비 수당 보전은 불가하니, 수당 보전을 위한 교육규칙 개정 등이 추진되지 않도록 조치
 - * 다만, 우리부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직무여건을 고려한 처우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임
- (노조 등 대응) 교원과 지방공무원간 형평차원의 갈등 소지 및 공무원 노조 반발 등에 대하여는 불가피성 설명 등을 통해 적극 대응

안건 문의 :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담당자:변흔갑 (☎02-2100-6348)

참고**법률자문 결과**

- 자문배경 :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행정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규칙(학교회계)을 개정하여 우리부에 공포예정 보고함에 따라, 교육행정관리비 지급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 자문내용 :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행정관리비 지급의 위법성 여부

변호사명	검토 의견	
김○○	위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함○ 그러나 교육행정관리비는 지급근거 법령이 없어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남○○	위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금전적 보수는 법령에 근거해 지급하도록 규정○ 지급시기가 일률적이고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정액이 지급되고 동일한 호봉과 근무연한자들 사이에서 그 지급 금액도 같은 경우라면, 이는 보수나 수당, 상여의 일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학교행정지원비라는 명목의 금전의 급부가 보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 지급의 근거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새길 수 있을 것임
최○○ 성○○	위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행정관리비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기보다는, 보수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및 제4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변호사명	검토 의견	
전○○	위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행정관리비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수당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음 ○ 실비보상 중 직급보조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비보상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규칙으로 정한 것은 위법 ○ 학교회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세입 및 세출의 항목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지방공무원의 수당을 신설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 교육규칙을 근거로 교육행정관리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임
최○○	위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도록 규정 ○ 학교회계는 관련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령근거없이 교육규칙으로 교육행정관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법
황○○	위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행정관리비는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봉급) 또는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수당)에 해당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지급할 수 없는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 ○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보수결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

별첨 4

관련 법령 발췌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가목의 3)의 수당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연명부

감사청구 제목 :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소급 지급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